

선	기 관 의 장
람	

포 항 시 보

제1081호 2016. 2. 16(화)

◀ 입법예고 ▶

-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포항시 공고 제2016-9호) 2

◀ 고 시 ▶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포항시 고시 제2016-3호) 10

◀ 공 고 ▶

- 무단방지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포항시 공고 제2016-191호)13

회								
람								

입 법 예 고**포항시 공고 제2016 - 9호**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포항시장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포항다소리세오녀합창단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중 포항다소리세오녀합창단 지원 사업을 추가
-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3. 관련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4. 조 례 안 : 붙임**5. 입법예고 : 2016년 02월 05일~2016년 02월 25일(20일간)**

6. 의견제출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서식

규 칙 안 내용	의 건	비 고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여성가족과(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 전화 054)270-5552, fax 054)270-0017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 . .

제 출 자 : 포 항 시 장

1. 개정이유

포항다소리세오녀합창단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중 포항다소리세오녀합창단 지원 사업을 추가.
-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3. 관련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4. 조례안 : 붙임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그 밖에 다문화가족”을 “다문화가족”으로 한다.

제5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포항다소리세오녀합창단 지원 사업

제5조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그 밖에 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제2조에서 규정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관련 전문가

제9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을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다문화가족지원법령”이라 한다)”을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다문화가족 지원 계획 수립) ① (생략)	제4조(다문화가족 지원 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②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그 밖에 다문화가족</u>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u>다문화가족</u> ----- -----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 <u>신설</u> 〉	9. <u>포항다소리세오녀합창단 지원 사업</u>
9. <u>그 밖에 시장이</u>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0. <u>시장</u> ----- -
제6조(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제5조 각 호의 사업은 <u>제2조에서</u> 규정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준용한다.	제6조(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 ----- <u>제2조에</u> 따른 ----- ----- ----- ----- ----- -----.

현행	개정안
제8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운영) ① ~ ③ (생략)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 5. (생략) 6. 그 밖의 관련 전문가 ⑤·⑥ (생략)	제8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관련 전문가 ⑤·⑥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생략) ② 시장은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위촉 해제-----.
제11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다문화가족지원 법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1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범위에서 ----- ----- -----. ⑤ ----- ----- -----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현행	개정안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범위에서 ----- -----.

고시

포항시 고시 제2016 - 3 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2. 12

포항시장

1. 사업 시행지 :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 사업(도로 : 소로3류50호선)
 - 명 칭 : 도시계획도로 소3-50 개설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장

4. 사업계획 내용

사업명	위 치	사 업 내 용	시행기간	사업시행자
도시계획도로 소3-50 개설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587-8번지 일원	도로 개설 (L=150m,B=6m)	실시계획인가고시 ~ 2017. 12. 31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소로3류50호선(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① 토지조서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 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성명	주소	권리관계	
계		9 필		664	645						
1	동해면 도구	587-7	대지	4	4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22-1	강영자	동해 농협	도구리 632-1	근저당	
2	동해면 도구	586-9	대지	6	6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22-1	강영자	동해 농협	도구리 632-1	근저당	
3	동해면 도구	587-9	대지	87	87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22-1	강영자				
4	동해면 도구	587-8	대지	18	18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22-1	강영자	동해 농협	도구리 632-1	근저당	
5	동해면 도구	587-6	대지	47	47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22-1	강영자	동해 농협	도구리 632-1	근저당	
6	동해면 도구	588-5	대지	12	12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22-1	강영자	동해 농협	도구리 632-1	근저당	
7	동해면 도구	588-4	대지	112	112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469-7	박영덕 외 1인				
8	동해면 도구	601-27	전	76	76	국(재무부)	-				
9	동해면 도구	602-67	전	306	283	대구 달서구 월성동 364 월성보성타운 102동 407호	김은자				

▶▶ 지 장 물 조 서 집 계 ◀◀

□ 사업명 : 동해 도구리 도시계획도로(소3-50) 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 재 지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단위	수량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리	지번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계			5 건									
1	동해 도구	586-1 (587-4)	상가 가옥 까추 담장 대문 수도 조경수 장독대 마당	슬래브 기와 판넬 블록 목재 콘크리트 수목 콘크리트 콘크리트	m ² m ² m ² m ² EA EA 주 m ² m ²	0.60 0.20 2.60 29.25 2.00 1.00 24.00 3.70 26.50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284번길 41, 204호	김기동				
2	동해 도구	587-5	까추 가옥 주방 가옥 까추 까추 화장실, 세면대 담장 담장 정화조 마당 대문 조경수 물탱크	판넬 조립식 조립식 스레트 스레트 판넬 스레트 블록 블록 정화조 콘크리트 철재 수목 PE제품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EA m ² EA 주 EA	11.20 84.70 7.80 114.50 18.10 12.40 6.60 74.14 33.60 2.00 98.50 1.00 2.00 1.00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529-12	강영자				
3	동해 도구	602-23	담장	콘크리트	m ²	6.00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602-23	협성비 취타운 나동				
4	동해 도구	602-51	창고	스레트	m ²	19.76	포항시 남구 시청로1(대잠동)	포항시				

※ 관계 토지조서, 도면 등은 포항시청 도로과 및 남·북구청 건설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도로과(☎ 054-270-34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포항시 공고 제 2016 - 191 호

무 단 방 치 차 량 강 제 처 리 (폐 차) 및 이 해 관 계 인 권 리 행 사 공 고

우리시 관내 노상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16. 02. 11.

포 항 시



1. 공 고 기 간 : 2016. 02. 11. ~ 2016. 03. 11. (30일간)
 2. 폐 차 장 소 : 포항시 관내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체
 3. 폐차 예정일 : 2016. 03. 12. 부터
 4. 대 상 차 량 : 02더6196 외 3대(붙임 참조)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가.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 20~30만원, 불응한 경우 100~150만원)
 - 나.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자동차 방치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다. 공고기간 내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6. 기 타 사 항
 -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본 공고문으로 갈음합니다.
 - 나.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차량 소유자(점유자)에게 있습니다.
 7. 문 의 처 : 포항시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담당 ☎(054)270-3643
- 붙 임 : 1. 강제처리 대상 1부.
2. 압류 및 저당내역 1부. 끝.

강제처리(폐차) 대상

관리 번호	자 동 차 등록번호	차 명	소유자	주인(법인) 등록번호	주 소	비 고
2015-00264	번호판 없음	오토바이 (은색)	미상	미상	미상	
2015-00265	02더6196	싼타모플러스 (1999)	허*곤	621121-1**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	
2015-00271	63나6648	NEW그랜저XG (2005)	공*항 (신*자동차상 사)	720804-1**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015-00273	55마6147	카스타 (2000)	박*경	720401-2**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구부랑4길	

암류 및 저당내역

번호	차량번호	차명	소유자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상주소	구분	축적기관	암류(저당)번호	암류(저당)내역
1	02타6196	싼타오플러그스 (1999)	하*군	621121-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상호로	암류1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23000 지)	저당-15705/06014779	이무보합과테로제납
						암류2	포항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교통과-7246	제납처분 (671906022263)
						암류3	포항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교통과-7246	제납처분 (671906022263)
						암류4	청주시상당구청 경제사회과	경제사회과-28240	주정차위반(2006-201183)
						암류5	상당구청 경제사회과	경제사회과-28240	주정차위반(2006-201183)
						암류6	포항시 북구청	북건설교통과-4211	주 정차위반 (2006-15016#40000)
						암류7	포항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8457	과테로제납 (200771906025320)
						암류8	포항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1524	과테로제납 (200771906042598)
						암류9	포항시 북구청	북건설교통과-4407	주 정차위반 (2007-22067#40000)
						암류10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	차등-18798/08244383	이무보합과테로제납
						암류11	포항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8937	과테로제납 (200971906016015)
						암류1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북건교-20165	주정차위반 (2010-01645540000 부위반일자:2010-05-11)
						암류13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	차등-18607/11013731	자동차중재해배상보장법위반과테로 제납
						암류14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	차등-18607/11013732	자동차중재해배상보장법위반과테로 제납
						암류15	음성군청	재무과-42404	지방세 제납에 따른 암류
						암류16	포항북부경찰서	2012D1906019467	과테로 제납처분에 의한 암류등록 (190670120355168)
						암류17	포항북부경찰서	2012D1906019702	과테로 제납처분에 의한 암류등록 (190670120340011)
						암류18	포항북부경찰서	2013D1906005293	과테로 제납처분에 의한 암류등록 (190670120562187)
						암류1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북건교-4274	주정차위반 (2013-041465 #)
						암류20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북구세무과-12554	지방세 제납(054-240-7271)
						암류21	포항시 도시건설사업소 차량등록과	차량등록과-800	자동차중재해배상보장법위반과테로 제납에의한 암류

입류25	담서구청 교통과	교통과-78296	차량과내로 전부 압류 (20101012019003)
입류26	담서구청 교통과	교통과-78296	차량과내로 전부 압류 (20080218000179)
입류27	담서구청 교통과	교통과-78296	차량과내로 전부 압류 (20090817007820)
입류28	담서구청 교통과	교통과-78296	차량과내로 전부 압류 (20090714005827)
입류29	담서구청 교통과	교통과-78296	차량과내로 전부 압류 (20071024007119)
입류30	담서구청 교통과	교통과-78296	차량과내로 전부 압류 (20070724004314)
입류31	담서구청 교통과	교통과-38181	담서지연과태료외 차량관리과태 료 전부 대채안류
입류32	경주경찰서	경비교통과-3014	교통법규위반과태료(대체:경북32 -8250)No.056741
입류33	경주경찰서	경비교통과-4667	교통법규위반과태료 (013321.70000)
입류34	경주경찰서	경비교통과-4667	교통법규위반과태료 (015192.40000)
입류35	경주경찰서	경비교통과-6436	교통법규위반과태료 (031912.40000)
입류36	포항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23803	자동차관리법위반
입류37	담서구청 징수과(053-667-2421)	징수과-4759	지방세채납
입류38	대구성서경찰서	경비교통과-5449	도로교통법위반 (200872233016274)
입류39	담서구청 징수과(053-667-2421)	징수과-6066	지방세채납
입류40	포항시 북구청	건설교통과-21377	주정차위반(2008-26750)
입류41	대구성서경찰서	경비교통과-1999	도로교통법위반 (200872233047078)
입류42	담서구청 징수과(053-667-2421)	징수과-2286	지방세채납
입류43	담서구청 징수과(053-667-2421)	징수과-7401	지방세채납
입류44	대구광역시 담서구청	교통과-69610/09007820	정기검사지연09년8월채납
입류45	포항시 남구청	건설교통과-3294	주정차위반 (2-2009-018375)
입류46	부천오정경찰서	201301355005622	과태료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 (135570130117736)
입류47	대구광역시 남구청 교통과 (053-664-3031)	교통과-65444	과태료(세외수입) 채납액 임체

입류48	부천오정경찰서	2014D1355000168	과테로 제납지분에 의한 입류등록 (135570130272705)
입류49	부천오정경찰서	2014D1355000759	과테로 제납지분에 의한 입류등록 (135570130292907)
입류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남진교-6587	주정차위반 (2014-000233 부)
입류51	평택시 송탄출장소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11861	주정차위반과테로(2014-06- 001111)
입류52	서울시 양천구 정수과	정수과-25	지방새채납
입류53	부천오정경찰서	2014D1355008831	과테로 제납지분에 의한 입류등록 (135570140308335)
입류54	부천오정경찰서	2014D1355008824	과테로 제납지분에 의한 입류등록 (135570140308458)
입류55	부천오정경찰서	2014D1355008999	과테로 제납지분에 의한 입류등록 (135570140317935)
입류56	부천오정경찰서	2014D1355009010	과테로 제납지분에 의한 입류등록 (135570140317694)
입류57	평택시송탄출장소지역경제 과	지역경제과-18367	주정차위반과테로(2014-10- 000165)
입류58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영업 심사팀-410(2014.03.16)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에 따른 자 동차 등록면류